[사 건 명] 행심 2017 - 40

학교폭력 가해에 따른 『학교에서의 봉사 3일 등』 처분 취소 청구

□ 청구인 : ◇◇◇

□ 피청구인 : ◎◎중학교장

[주 문] 피청구인이 2017. 9. 19. 청구인에 대하여 한 학교폭력 가해에 따른 『학교에서의 봉사 3일 등』 처분을 취소한다.

[청구취지] 주문과 같다

[재결이유]

1. 인정사실

① 청구인은 2017. 9. 7. △△△ 등 8명이 참여하는 '단체톡방'에 '같은 반 학생 □□□이 강제전학을 갈 것이다'라는 취지의 문자를 게시하였다.

② ●●은 2017. 9. 8. 청구인이 '단체톡방'에 게시한 내용을 다른 친구들에게 전달하였고, □□□이 이를 알고서 청구인에게 진위여부를 확인하던 중 ●●이 청구인을 폭행하였다.

③ 청구인의 아버지는 2017. 9. 8. 청구인이 폭행을 당했다면서 학교폭력사안으로 신고하였고, ◎◎중학교 학교폭력전담기구에서 사건을 조사한 후 2017. 9. 12.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 회부하였다.

④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2017. 9. 19. 청구인이 단체톡방에 게시한 문자로 인하여 이 사건 폭행이 발생하였다면서, 청구인에 대하여 서면사과, 학교에서의 봉사활동 3일(매일 2시간씩), 학생 및 보호자 부가적 특별교육 4시간의 처분(이하 이 사건 조치라고 한다)을 하도록 의결하였다.

⑤ 피청구인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청구인에게 이 사건 조치를 하였다.

2. 당사자의 주장

가. 청구인의 주장

① 청구인은 단체톡방에 위와 같은 내용의 문자를 게시하였으나, 이는 단순한 정보의 입력에 불과하고 사이버따돌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.

②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는 청구인이 피해자임에도 청구인에게 사이버 폭력의 가해자라고 판단하여 이 사건 조치를 한 것으로 이는 부당하다.

나. 피청구인의 주장

① 청구인이 단체톡방에 게시한 글은 □□□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으로서 이는 학교폭력에 해당한다.

②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청구인에 대하여 이 사건 조치를 하면서,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 고시를 준수하였으므로 공정하고 객관적이다.

③ 학교폭력 신고접수 이후 적법절차에 따라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개최되었고,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모든 상황을 검토하여 이 사건 조치를 하였다.

3.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 여부

가. 학교폭력사안 대응 기본지침

학교폭력이 신고되면 학교폭력전담기구의 협의를 거쳐, 관련학생, 목격자 등이 작성한 자술서 및 증거자료 등을 검토하고, 학교장에게 사안조사 결과를 보고하며, 학생의 보호자에게 이를 통보하고 있다. 또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사안조사 결과를 토대로 회의를 진행하고, 가해학생과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들의 의견을 들은 다음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결정한다.

나. 이 사건의 경우

① 학교폭력사안 접수 보고서, 학교폭력 전담기구 협의 결과 보고서, 전담기구 사안조사 결과보고서에는 ‘청구인이 □□□의 강제전학에 대하여 말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하여 다툼이 생겨, ●●이 주먹으로 청구인의 복부와 얼굴을 때렸고, 청구인이 담임교사에게 신고하였다’고 기재되어 있다.

② 2017. 9. 19. 개최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회의록에는, 청구인과 그 아버지가 위원회에 참석하여 피해자로서 의견을 진술하였고, 진술을 마친 다음 피해자에 대한 재심 및 불복절차의 안내를 받았다.

그리고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●● 등 7명에 대하여 가해자로서 의견을 듣고 ●● 등에게 가해자로서 불복절차에 대한 안내를 하였다.

그런데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피해자와 가해자의 진술을 모든 들은 다음, 청구인이 피해자일 뿐만 아니라 가해자로 판단된다면서, 청구인에 대하여 의견진술 기회 등을 주지 않은 채 이 사건 조치를 하도록 결정하였다.

③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학교폭력 관련학생 및 보호자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이유는 관련학생의 행위가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, 학교폭력에 해당한다면 그 심각성, 지속성, 고의성, 반성정도, 화해정도 및 해당조치로 인하여 가해학생의 선도가능성이 있는지 등에 대한 판단을 하기 위함이다.

따라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 피해자로 참석하여 진술 및 의견을 제시하는 피해자로서는 학교폭력으로 인한 피해 및 현재상황,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지 및 가해자에 대한 처벌의 정도 등에 대한 의사표시를 할 것이다.

한편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가해자에 대하여 진술 및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주는 이유는, 자신의 행위가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, 학교폭력이 발생한 원인 및 그 피해정도, 피해자와의 관계회복 정도 및 학교폭력에 대한 적정한 처분에 대한 의견을 제시함으로써 자신에 대한 유리한 진술 및 증거를 제시할 기회를 주기 위함이다.

④ 그런데 이 사건에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청구인에 대하여 피해자

로서의 진술 및 의견을 제시할 기회만 주고, 학교폭력의 가해자라고 판단한 다음에는 청구인에게 자신을 방어할 기회를 주지 않은 채 이 사건 조치를 하도록 결정하였다. 이는 학교폭력의 가해자에 대한 제재로서 이 사건 조치를 취함에 있어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판단된다.

⑤ 따라서 청구인에 대하여 가해학생으로서 진술 및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주지 않은 채 이루어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결정은 부적법하다 할 것이고, 부적법한 결정을 기초로 한 이 사건 조치 역시 위법하다 할 것이다.

4. 결론

그러므로 이 사건 조치를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.